

## 2021년 장애인일반형일자리(전일제/시간제) 참여자 모집공고

용인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장애인을 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### 1. 근무조건

- 근무기간 : 2021년 1월 ~ 12월(12개월)
- 근무시간
  - 일반형일자리(전일제) : 1월~11월 주 40시간, 12월 주 37.5시간
  - 일반형일자리(시간제) : 1월~11월 주 20시간, 12월 주 19시간
- 근무내용 : 사회복지 및 일반 행정 업무 보조 등
- 근무지 : 시청, 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, 우체국, 도서관, 경찰서, 장애인복지관, 장애인단체 등
- 보수
  - 일반형일자리(전일제) : 1,822,480원(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)
  - 일반형일자리(시간제) : 911,240원(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)
  - \*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음.
  - \* 12월 단축근무 적용 시 보수 변동 가능함.
  - \* 향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공고 내용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수정 공고 진행 예정.

### 2. 모집내용 및 기간

- 모집인원 : 97명
  - 일반형일자리(전일제, 주5일 8시간/일) : 56명
  - 일반형일자리(시간제, 주5일 4시간/일) : 41명
- 공고기간 : 2020. 11. 16.(월)~11. 27.(금)
- 접수기간 : 2020. 11. 25.(수)~11. 27.(금) 18:00까지(단, 휴일제외) ※ 방문 접수만 가능
- 면접일 : 2020. 12. 3.(목)~12. 4.(금) ※ 면접장소 : 용인시청 3층 비전홀
- 선정통보 : 2020. 12. 24.(목) 개별 문자 통보 예정

### 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- 신청자격: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용인시 주민등록 거주자
- 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
#### 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
-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는 제외)
  - ※ 단,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
(ex. '21년 신청자의 경우, '20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)
-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
-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  - ※ 단,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-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  - ※ 단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-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(등급외자는 신청 가능)
-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-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

#### ※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(2년 이상 초과 참여 가능)
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진 장애등급 1급 ~ 3급)
- **2021년 1월 1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**
  - \*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(18년~20년) 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% 이상 감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(차상위 계층은 2019년부터 제외)

### 4. 제출서류(①~② 공통, ③-⑥ 해당자에 한함)

※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

① 참여신청서 : 희망직무 기재 필수
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

- ※ '참여신청서' 및 '개인정보동의서' 작성 시, 자필서명 필수  
단,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(ex. 도장 등)

※ 신청자의 '장애인등록여부' 및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'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

----- 아래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-----

구분	증빙서류																							
③ 자격증 소지자	-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※ 컴퓨터활용능력, 사회복지사, 직업재활사 중 소지 자격증																							
④ 졸업예정자	-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※ 졸업예정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																							
⑤ 여성가장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첨 부 서 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배우자 무(無)</td> <td colspan="2">가족관계등록부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7">배우자 유(有)</td> <td>가출·행방불명</td> <td>실종신고서</td> </tr> <tr> <td>장애</td> <td>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</td> </tr> <tr> <td>질병으로 요양 중</td> <td>의사의 진단서</td> </tr> <tr> <td>군복무</td> <td>복무확인서</td> </tr> <tr> <td>학교 재학</td> <td>재학증명서</td> </tr> <tr> <td>교도소 입소</td> <td>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</td> </tr> <tr> <td>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</td> <td>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</td> </tr> <tr> <td>이혼소송 제기</td> <td>이혼소송확인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첨 부 서 류		배우자 무(無)	가족관계등록부		배우자 유(有)	가출·행방불명	실종신고서	장애	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	질병으로 요양 중	의사의 진단서	군복무	복무확인서	학교 재학	재학증명서	교도소 입소	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	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	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	이혼소송 제기	이혼소송확인서
	구분	첨 부 서 류																						
	배우자 무(無)	가족관계등록부																						
	배우자 유(有)	가출·행방불명	실종신고서																					
		장애	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																					
		질병으로 요양 중	의사의 진단서																					
		군복무	복무확인서																					
		학교 재학	재학증명서																					
		교도소 입소	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																					
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		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																						
이혼소송 제기	이혼소송확인서																							
⑥ 취업지원대상자	-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※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																						

5. 접수방법 및 근무처 : 참여를 원하는 자가 직접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

1)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(직무 : 행정도우미,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등 / 전일제 주 5일, 8시간/일 근무) 37명

접수처 : 아래 근무처 중 근무 희망 기관에 직접 방문 제출 ※ 1지망, 2지망 지정						
유형	전일제					
구분	처인구(11명)		기흥구(15명)		수지구(11명)	
1	포곡읍(1명)	324-5536	기흥구청 사회복지과(1명)	324-6276	수지구청 사회복지과(1명)	324-8253
2	모현읍(1명)	324-5603	신갈동(1명)	324-6824	풍덕천1동(1명)	324-8618
3	이동읍(2명)	324-5717	영덕1동자치센터 (1명)	324-6818	풍덕천2동(1명)	324-8623
4	원삼면(1명)	324-5753	구갈동(2명)	324-6835	신봉동(1명)	324-8957
5	백암면(2명)	324-5802	상갈동(1명)	324-6840	죽전1동(1명)	324-8789
6	양지면(1명)	324-5844	보라동(1명)	324-6839	동천동(2명)	324-8718
7	중앙동(1명)	324-5905	기흥동(1명)	324-6668	상현1동(1명)	324-8790
8	역삼동(1명)	324-5918	구성동(1명)	324-6712	상현2동(2명)	324-8744
9	유림동(1명)	324-5965	마북동(1명)	324-6733	성북동(1명)	324-8763
10	-		동백2동(1명)	324-6888	-	
11	-		동백3동(1명)	324-7703	-	
12	-		보정동(1명)	324-6768	-	
13	-		상하동(2명)	324-6787	-	

2) 공공기관 / 비영리기관 (직무 : 행정도우미,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등 / 전일제 주 5일, 8시간/일 / 시간제 주 5일, 4시간/일 근무) 31명 (전일제 15명, 시간제 16명)

접수처 :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※ 1지망, 2지망 지정 장애인복지과(324-3153)에 직접 방문 제출			
연번	배치기관	일자리유형	
		전일제	시간제
1	시청 장애인복지과		1
2	시청 일자리정책과	1	
3	중앙도서관		2
4	동백도서관		2
5	남사도서관		1
6	상현도서관	2	
7	죽전도서관	1	
8	용인동부경찰서	2	
9	용인서부경찰서	1	
10	용인우체국 우편물류실	2	
11	가온누리평생학교	1	1
12	사단법인 쿼		1
13	(사)반딧불이	1	1
14	(사)한국척수장애인협회	1	2
15	용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	1	
16	용인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		1
17	우리동네평생학교		2
18	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	1	
19	한국지체장애인협회	1	2

- 3) 공공기관 / 비영리기관 (직무 : 행정도우미,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등 / 전일제 주 5일, 8시간/일 / 시간제 주 5일, 4시간/일 근무) 29명 (전일제 4명, 시간제 25명)

접수처 : 아래 근무처 중 희망 기관에 직접 방문 제출 ※ 1지망, 2지망 지정			
연번	접수처	일자리유형	
		전일제	시간제
1	처인장애인복지관	2	10
2	기흥장애인복지관		6
3	수지장애인복지관	2	3
4	지구촌노인복지센터		2
5	토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(풍덕천동)		1
6	수지노인복지관		3

#### 6. 기타 참고사항

-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후 참여제한 기간(1년) 동안 ‘적극적인 구직활동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.  
(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/ 예시 : 워크넷 구직활동 내역)
-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

**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**

\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)

- 24세 이하(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-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
-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, 북한이탈주민,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% 공제
- 25세 ~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% 공제

-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

- \*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등)  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"성범죄"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"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"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
- \*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2(종사자)  
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단,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- \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

-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.

\*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'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'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**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**에 포함. (노동부 차별개선과-2304)

- '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' 서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용인소식 고시·공고에서 다운 로드 가능
  -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
  -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(TEL.031-324-3153) / 용인시치인장애인복지관(TEL.031-320-4870) /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(TEL.031-895-3250) /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(TEL.031-270-0230)으로 문의

2020년 11월 18일

용 인 시 장